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27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13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7. 6. 9.

판 결 선 고 2017. 7. 7.

주 문

1. 피고가 2016. 6. 8.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2,226,51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89,0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27

가. 원고는 2015. 2. 9. [redacted]군으로부터 군유림인 평창군 B 임야에 있는 군유임산물인 낙엽송 2,079본수, 소나무 387본수를 아래와 같이 매수하기로 하는 군유림 임산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2조(재산의 표시)

NO	소재지	구분	수량		용도
			본수	재적(㎥)	
1	평창군 B	낙엽송	2,079	1,226	원목
		소나무	387	167	펄프
		합 계	2,466	1,393	

제3조(대금납입)

군유 임산물 매매대금은 8,388만 원으로 하며, 원고는 평창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계약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매각시시 및 매각조건)

① 원고는 매각 계약 후 임산물을 4개월 이내에 반출해야 한다.

② 4개월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평창군에 귀속됨. (단,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사전에 평창군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군유임산물 이전 경비 및 책임)

① 군유 임산물 이전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② 기존 임도 및 운반로 외에 임산물 운반로 등이 필요한 경우 원고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지관리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신고절차를 사전에 득한 후 반출해야 하며, 반출로 인한 민원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⑤ 원고는 반출 완료 후 운재로 전구간에 대하여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복구(원칙적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하며, 호우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회단배수로 설치 등) 및 복구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6. 6. 8. 원고에게 취득세(가산세 포함) 2,226,510원, 농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27

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89,09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5.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7.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것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므로, 원고가 입목을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신의칙 및 비과세관행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입목을 취득한 것이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는 본세와 가산세의 금액 및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식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는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입목'이란 지상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27

식재되어 생육하고 있는 과수, 임목, 죽목을 말하므로,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밀집한 숲을 이룬 수목이 토지와 독립하여 계약의 목적물로 되었다면 그 수목은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1983. 10. 11. 선고82누5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계약의 목적물이 '입목'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목적물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원고는 원목을 생산·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인 점, 이 사건 계약서에 매매대상 임산물의 용도가 '원목', '펄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에 의하더라도 매매대상 임산물의 반출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는 임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임목을 벌채한 원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계약의 상대방인 평창군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27

②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임산물을 반출하여야 하고 위 기간 동안 반출되지 아니한 임산물은 평창군에게 귀속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반출기간 동안 벌채하여 반출한 원목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취득하지만, 임목의 소유권은 반출기간 동안 벌채 및 반출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취득할 뿐이고 반출기간이 지난 후 반출되지 않은 임목의 소유권은 다시 평창군에게 귀속되는바, 실질적으로 원고가 임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지방세법 제15조는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으로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 이후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는 0원이 된다. 이러한 현행 지방세 관계 법령은 이 사건 계약과 같이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 그 입목의 취득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를 재차 확인하는 취지로 보인다(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5조에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으로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27

재판장 판사 이다우

판사 허문희

판사 유재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27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입목 : 1천분의 2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단서 생략)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27

①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2015. 12. 31. 신설)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12.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1)·2),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1)·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끝.